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공고

2020년도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컨설팅 수행사 모집공고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지역 수출 협력기업의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관세법인(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2월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장

Ⅰ. 추진 배경

○ 수출기업의 협력사는 원산지입증 책임이 따르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소극적일 수 있고, 수출기업 또한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협력업체는 수출기업으로부터의 민감한 정보 요구에 대한 거부감과 복잡한 원산지증빙서류 준비 등으로 업무 부담
- 수출기업은 원산지확인서 사후검증에 의한 추징과 대외 신인도 저하 등을 우려

<원산지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운영방식

○ FTA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소재 관세법인(사무소)의 FTA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고 결과보고서에 서명하여 작성・제출

○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의 정합성에 흠결이 없을 경우 원산지확인결과서 발급

Ⅱ. 공고 개요

□ 공고 사항

○ 용 역 명 : 2020년도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
○ 접수기간 : 2020년 02월 17일(월) ~ 02월 21일(금) 까지
○ 수행기간 : 2020년 사업종료시 까지
○ 모집단위 : 제주지역 소재 관세사무소(법인)
○ 컨설팅 비용

항 목	1건당 최대비용* (V.A.T.포함)
역내산 결과보고서 (포괄적인 방문컨설팅 포함)	600천원
비역내산 결과보고서 (포괄적인 방문컨설팅 포함)	400천원

* BOM 구성이 단조로운 1차 산물이나 단순 물품 등은 반려대상임
(반드시 수행 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제주FTA활용지원센터의 허락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수행난이도 및 결과 충실도에 따라 비용 차등지급 가능
* 기업 당 3품목까지 신청 가능

○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 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 필수사항
- 공고일 현재 정해진 법령에 의거 정식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관세법인(사무소) (한국관세사회 등록 필수)
- 본 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FTA컨설팅 경력 3년 이상 관세사, 원산지관리사)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관세법인(사무소)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 및 거주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등본 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이어야 함)

- 비정기적 센터방문 및 수혜기업 상시 대응에 지체 없어야 함

○ 우대사항

-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의 경험을 보유한 관세법인(사무소)
- 제주지역 실정에 맞춘 FTA활용에 능통한 관세법인(사무소)

□ 수행사 선정방법

○ 모집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평가 → 계약협상→ 사업자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요청서에 의거한 공고 방식으로 제안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내용면에서 충실한 사업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참가 자격에 부적격한 사유가 있거나 제출서류에 흠결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선정탈락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용역제안 및 참가신청서,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 실적 서식 등은 본 공고의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1부

② 용역제안 및 참가신청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참조

③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서식 제2호] 참조

④ 최근 3년간의 주요 실적 : [별지서식 제3호] 참조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⑦ 해당사업 수행인력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⑧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등록증 및 자격증 각 1부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⑨ 기타 자격증 및 어학관련 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시 제출)

⑩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⑪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필수)

⑫ 통장사본 1부(국내은행에 한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세부일정 및 선정대상자 개별 통보

□ 영업제한 및 비밀유지

- 용역수행자는 제주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를 비밀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전액환수 및 고발조치)
- 해당사항 및 기타 부정한 방법 적발 시 당 기관 사업 영구 퇴출

□ 문의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TEL : 064-759-2577 / FAX : 064-757-2168)

○ 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0. 02.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startwith87@naver.com) 접수

○ 주소 : 제주시 청사로 1길 18-4번지 제주상공회의소 1층 FTA활용지원센터

붙 임 : 제안요청서 1부. “끝”